

의안번호	2221304
의 퇴 인	박은정의원
회 답 일	2026.10.7.
추 계 번호	26D42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2조 (심리와 결정)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또는 재수사를 결정함(제2항) 재수사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2	제264조의3 신설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항)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제2항)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봄(제3항)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264조의3 신설 (공소유지담당변호사)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수사 결정을 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할 경우 재수사에 필요한 비용과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경비 지원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재수사에 따른 비용은 개별 사건의 유형,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1년~2025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인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도별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 결정인원: 2021~2025년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청인원	17,295	14,486	21,139	25,353	18,105
결정인원	116	86	121	124	84

자료: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